

대전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2가단10401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지현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이현아

변 론 종 결 2022. 9. 7.

판 결 선 고 2022. 9. 28.

주 문

1. 별지 목록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C(D생)과 피고 사이에 2021. 10. 5.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약정은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1) C은 2011. 8. 26. 주식회사 E(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의 신용카드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그 무렵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① 2016. 2. 25. 580만 원, ② 2016. 11. 1. 940만 원을 각 카드로 대출을 받았으나,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E는 2018. 11. 14. F에 위 C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F는 2019. 12. 13. 원고에게 위 C에 대한 채권을 순차로 양도하였고, 각 채권양도일 이후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20차전158374호로 양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C은 원고에게 22,441,164원 및 그 중 9,400,000원에 대하여 2021.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98%, 1,450,003원에 대하여 2021.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96%, 2,178,768원에 대하여 2021.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7%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2020. 7. 30.자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2020. 8. 4. 위 C에게 송달되었으며, C이 이의하지 않아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1) G이 2021. 6.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상속지분 3/11), 자녀인 H, I, J, C(상속지분 각 2/11)이 있다.

2)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은 2021. 10. 5.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을 하였다.

3)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3, 4 부동산에 관하여는 2021. 10. 1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다만 부동산등기부상 등기원인은 망인이 사망한 날인 2021. 6.

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재되어 있다),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21. 10.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0. 14.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대위자로서 2021. 6. 6.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G의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위와 같은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진 것이다.

다. C의 채무초과상태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인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및 K카드, L카드, M카드, N캐피탈, O자산관리 등에 대한 대출금 등으로 원금 합계 75,827,771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P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는 C에 대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11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채무자인 C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

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와 망인의 공동 소유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의 단독재산이 아니라 피고가 망인과 함께 마련한 공동재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받기 위하여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신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서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이 피고와의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데,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매수 자금의 마련 방법,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전후의 피고의 구체적인 기여 등 부부공동재산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주택에서 현재까지 장기간 거주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망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막내아들인 C과 동거하지 않아 C의 재산상황이나 채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는 남편인 망인과 함께 거주해 온 주택과 그 부지 뿐 아니라 선산을 제외한 망인 명의의 상속재산을 모두 단독으로 상속받는 내용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점, 피고와 C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법무사 Q사무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의 단독 소유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피고와 C 사이에 그 상속재산 중 C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피고를 상대로 채무자인 C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강길연

부동산 목록

1. 대전광역시 유성구 R 대 234.5㎡

2. 대전광역시 유성구 R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S

벽돌 및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

1층(3가구) 123.65㎡, 2층(1가구) 123.35㎡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하실 20.1㎡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부속 건물 2.88㎡

3. 충청남도 논산시 T 답 2955㎡

4. 충청남도 논산시 U 답 2864㎡ 끝.

